

대학의 현실과 질적 발전노력

정 재 황 / 홍익대 법학과 교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과제의 하나인 교육개혁의 작업이 국제화·개방화라는 파고 속에서 차일피일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지난 2월의 교육개혁위원회의 출범으로 늦장 출발이나마 닦을 올렸다. 교육개혁의 대상으로서 대학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반성을 통한 제자리 찾기와 도약을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개혁안들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을 단순히 삼기시키는 것보다는 그동안 간파하고 있다고 보이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문제의 근원 - 양적 팽창지향의 폐해

우리 대학들의 문제를 치유하고 나아가 대학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원인들이 아닌 근원적 원인들을 찾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원인들이 제대로 찾아져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개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험하였듯이 미봉책 내지 대증요법의 눈가림으로 끝날 것이다.

여러 근본적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특히 대학교육의 기능과 사명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대학발전의 잘못된 개념 내지 척도를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척도가 문제이다. 그동안 대학발전의 척도를 개발독재시절의 정권이 그러하였듯이 양적 팽창에 두었다.

언젠가 어린 또래 아이들끼리 각자 다니는 학교가 더 좋다고 자랑하면서 그 근거로 학교건물의 층수가 더 많은 학교가 훌륭한 학교이고 그래서 더 나은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자랑하는 아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기억이 난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대화는 양적인 팽창을 그 발전의 잣대로 삼아온 우리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

대학은 더욱 그러하였다. 하나의 대학교가 인문·사회과학대학뿐 아니라 이공계대학도, 나아가 예술계대학과 의과대학까지 모두 가져야 명문대학교인양, 기회만 되면 팽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시설 확충, 교수충원은 입학시켜 놓은 학생들이나마 더욱 잘 교육시켜 내야 한다는 당연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학생증원인가의 요건쯤으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양적 팽창 일변도는 대학교육에서의 학문적 지식의 열악

뿐만 아니라 상아탑의 인격적 품위 향상도 등한시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제공자가 되었다.

우리는 오늘의 한국의 대학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여건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목도한다. 아니 주시하여야 한다. 밖으로는 UR 등 세계화·개방화의 과고가 드높다. 교육영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한국 교육시장의 개방요구가 드세다.

국내의 상황은 또 어떠한가? 1996년부터는 입학정원의 자율화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입학정원의 자율화를 통해 입학정원이 확대되는 경우를 무시하더라도 대학입학 희망 학생수는 그대로 머물거나 대학입학연령 인구 자체의 감소에 따라 오히려 2000년대에 가면 대학이 학생을 스카우트하려 동분서주해야 할지 모를 형편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여건 내지 변화될 여건 속에서 대학의 사명·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이 특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대학이 세계의 대학으로서 세계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각 대학이 특화되어야 한다. 하나의 대학이 모든 학과에서 최고라는 것은 더 이상의 자랑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대학입시에서 서울대학교와 모 공

과대학에 이중합격한 학생들이 결국 대거 서울대학교에 입학함으로써 벌어진 웃지 못할 일을 보면서 대학의 특화가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나 그 과제의 달성은 지난한 것임을 다시 느꼈다.

2. 개별 문제들

1) 대학교원의 충원문제

그동안 대학교수의 충원과정상의 잡음이 적지않게 나오곤 하였다. 교육법 제79조 제3항은 대학교원의 자격을 일정 학력과 연구교육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형식적 기준만으로 과연 적격자가 임용되는 것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해마다 늘어나 모 대학에서는 졸업식에 빌려주는 박사학위복이 동이 난 일이 신문의 가십거리로 보도되는 판국이다. 박사라 하여 전부 대학교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박사의 대량배출은 이처럼 대학교원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깨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그러한 수요공급 시장에서의 충원이 정말로 자질 있는 교수희망자들에게 공정하고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학교원 충원에서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교원의 충원의 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학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인격을 갖춘 대학교수를 뽑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학력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질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구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자격시험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박사학위 소지자라도 이 시험에 통과되어야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그 시험의 성적, 결과가 선발·임용에 기본적인 기준이 되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학위논문 등을 면밀히 검토할 권한이 부여된 각 전공분야마다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고 이 위원회는 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학계풍토를 보아 이러한 심사제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학위논문 등에 대한 평가를 과연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논문의 수월성이나 학문적 가치성은 어느 정도 관련 학계의 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등

급으로 나누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평가가 아닌 학연·지연에 얽히는 등 편파적인 평가를 한 위원들은 두고두고 사계의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위험부담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평가위원들도 공정평가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므로 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교수재임용 제도의 모순과 교수업적평가제의 필요성

현재의 재임용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교수의 활동에 대한 평가로서 연구실적 등에 대한 평가는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단이나 학교경영자에 의한 통제수단이나 교수 순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장이 재임용을 추천한 것을 다시 철회하면서 철회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1헌마190, 『헌법재판소공보』 1993년 제2호, 171면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사위원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학장 단독으로 철회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위반이며, 인사위원회에서의 재임용심사대상자인 교수에게

항변기회 내지 의견진술기회 등을 주었어야 했다. 특별히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는데도 제단 등과의 대립관계 때문에 탈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 재임용제도는 그 도입 당시의 정치적 배경 등이 논란되었던 만큼 더욱 문제의 소지가 많다.

현재의 교수재임용제도는 진정한 교수실적평가제도 아닐 뿐 아니라 교수의 연구·강의의 육고취를 위한 동기유발의 기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교수재임용제는 없어야 한다. 대신에 진정한 교수실적평가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한 평가제도도 제대로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객관적 평가기준이나 절차·방식은 교수들의 합의하에 설정될 것이 요구된다.

3)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

현행 입시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던 지난해에 각 언론은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학생들의 대학선택권을 넓힌 현행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

과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과연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대학들을 찾아서 선택하고 있고 그러한 선택으로서 복수지원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행사로 나타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하지 않았음이 현실이다. 고려대학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서 지금의 학교선택시기를 물었던 결과 63% 가까운 학생들이 2차 수능시험결과 뒤에 택한 것으로 나타났고(『동아일보』 94.3.28일자 보도 참조), 서울대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47.4%는 고3부터 원서접수전 사이에, 13.8%는 원서접수기간 중에 전공선택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조선일보』 94.3.24일자 보도 참조)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보다도 성적 등에 의한 학교·학과선택을 하고 있음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의 적성보다는 여전히 학교의 명성을 따라 선택하는 현상이 강하게 남아 있고, 장애가 밝은(?) 소위 인기 학과에의 편중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진 데도 이러한 현상은 도외시한 채 과연 지난번 입시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자신의 적성보다는 소위 일류 대학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차라리 한 수험생당 몇 개의 대학들을 각자

가 선호도의 순위를 매겨 지원을 하게 하고 그것을 컴퓨터에 넣어 합격생을 배정(?)하는 것이 그나마 요행이라는 변수라도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적성을 찾아 선택한 대학에서의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에서의 각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 대학들은 앞서 지적한 대로 특화된 주력학과를 육성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학입학 희망자들의 여러 다양한 대학의 선택과 진학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은 국가의 임무이기도 하다. 진정한 진로교육이 시급하다. 대학도 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도와야 한다.

수학능력시험 자체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다. 수학능력시험의 사회영역에 관한 문제들은 과연 대학생으로서의 학업이수능력을 측정하기에 충분히 적합한 것들로만 구성된 것인지의 문이다.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들로는 측정이 제대로 안될 것임은 물론이다. 제도 그 자체의 도입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양질의 문제를 출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출제인력을 확보한 가운데

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능계의 대학입시도 문제이다. 예능계 입시준비를 위하여서는 일반 인문계보다 교육비가 훨씬 많이 든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려온다. 왜 그러한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가난하나 진정으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예술가로서의 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니 이러한 현상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무색하게 한다.

대학입시에서의 각 대학의 자율성 확보요구라는 목소리는 입시부정이라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대학의 치부가 그러도 빨리 망각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게 만든다. 자율은 책임이 따른다는 당연한 사실을 떠올리기 전에 당장 우리 대학들이 자율의 자세를 갖추었는지부터 의문스럽다. 단적인 예로,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여러 대학들이 소위 주요대학을 쫓아 대개 국어·영어·수학 중심으로 본고사를 치를 예정이라는 사실은 과연 대학들이 자율적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대학기관이 국내에 상륙하게 된다고 한다. 교육영역에서도 시장개념이 통하여야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나,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시장의 칩식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칩식문제이기도 하다. 대학입시와 학생선발제도도 이러한 개방화에 대비하는 제도로써 개혁되어야 한다.

4) 대학재정과 시설의 문제

오늘날 대학의 재정이 빈약하다고 자주 지적되고 있다. 여러 가지 재정확보 방안들이 백출하고 있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보다 그 노력의 뒷편에 가리워져 있는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실질적인 면에서의 문제부터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재정본근이라는 학교들이 과연 자구노력을 얼마나 하는지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외부의 fund도 확보함이 필요하나 그 이전에 먼저 재정확보의 자구적인 노력들이 아쉽다. 이 점과 관련하여 새로운 재원마련 이전에 먼저 기존의 학교시설 등 재원의 적정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당장 공간활용이 효율적인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대학은 앞서 지적한 대로 양적 팽창의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으로 인하여 거대한 캠퍼스가 마치 큰 자랑거리이다. 재원이 마련되면 그럴듯한 캠퍼스부터 짓겠다는 생각들이 앞선다. 자랑거리가 아니라면 대학입시요강이나 학교안내 책자에 큰 캠퍼

퍼스의 전경을 실을 리 있을까. 그러나 대학인으로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한정된 국토에서 주택사정이 좋지 않고 일반 시민과 국민을 위한 택지의 확보가 어려운데, 대학은 교육과 학생활동에 불가결한 공간 외에 여분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 도덕적인가 하는 점이다. 수도권 내지 도심에 소재한 대학들은 특히 그러하다. 시민들은 휴식공간인 공원 등이 부족하여 갈 곳이 없는데 과연 대학생들은 캠퍼스 잔디밭이 좋아라 하면서 낭만을 찾고 즐기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지? 프랑스 유학 시절 생소하고 의외라고 느낀 것은 파리 대학에는 교사 외에 별다른 캠퍼스도 없고 대학교수들의 개인연구실도 없다는 사실이다. 중세 때 지어진 낡은 건물에서 강의를 듣고, 캠퍼스 잔디밭도 없는 대학이 파리 대학이다. 캠퍼스가 넓고 최신식 건물이어서 석학들을 배출할 수 있었는가? 미국의 M.I.T.는 우리나라 유학생들간에 '구로공단'이라는 우스개 별명으로 불린다고 한다. 그러한 M.I.T.가 세계의 첨단기술·학문을 주도하고 있다.

넓은 잔디밭보다는 연구소 등 연구시설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학설치기준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

는 소리라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즉, 대학설치기준령이 일정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설치기준령은 실질적으로 대학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규모의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형식적으로, 일률적으로 시설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문제이다. 예를 들면 동기기준령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총학생정원 1인당 30권의 도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도서이든 관계없다는 것이다. 학과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부터 문제이다. 물론 강의를 위한 장소인 교사나 최소한의 휴식공간 등의 확보는 당연한 의무이고, 예컨대 체육대학의 운동장, 체육관이나 예술대학의 실기실 등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드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정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여입학제라는 미명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도는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합치될 여지가 적다. 그 능력에는 부모의 자력이라는 능력도 포함되니 헌법

에 합치된다고 볼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대학자율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 기부금입학제로 대학이 시행초기에는 그런대로 재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자초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대학이란 돈주고 갈 수도 있고, 또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도 많아질지 모르니, 과거처럼 들어가기 힘든 대학으로서 대학을 나오는 것이 아닌 바에야 구태여 돈을 주면 서까지 대학졸업장을 손에 쥐어야 하는가 하는 회의적인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기부입학제가 얼마나 제정확보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예산의 투명성도 문제이다. 예산의 집행이 공정히, 소기의 목적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나 그 이전에 예산을 어떠한 항목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 하는 우선순위부터 매겨져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예산의 적정한 활용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감사권이나 의견제시권을 제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대학간 협조 체제의 형성

대학간의 협조라는 말을 내놓으면 흔히 떠올리는 것은 고작 대학간 학점 상호인정 등의 단

순한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간 거시적·효율적 협조체제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대학간 공동연구시설, 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학간 공동연구시설과 공동연구소의 설립 등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우리의 대학제정 형편에도 매우 유익하리라 본다. 예를 들어 A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나 B대학교 기계공학과나 C대학교 기계공학과 모두가 각각 몇 억 원씩을 들여 동일한 기계를 구입할 경비로 하나의 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경비를 다른 고가의 첨단기계를 구입하여 공동연구시설을 갖추어 3개 대학교 기계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학생들은 훨씬 많은 연구설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기초과학지원센터를 특정 대학에 설립하여 공동이용케 하고는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학들간에 대학들에 의한 자율적 공동연구시설을 설립하자는 제안이다. 비단 연구시설뿐 아니라 공동농장, 공동연습림 등에도 해당되는 제안이다.

대학교들간의 공동도서관도 역시 대학간의 하나의 협조체제로서 가능하다. 우리 대학에는 도서관에 책이 없다고 한다. 각

대학마다 도서관을 거창하게 짓고, 설령 시설기준에 맞는 도서관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도서들이 다른 대학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서적들이라면 과연 그러한 도서관 운용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웃지 못할 일은 일정량의 법정 도서량을 채워야 한다는 인가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비전문서적 또는 뒤떨어진 구판 서적들을 구비하고 서로 많은 장서를 가진 양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각 대학의 내실 없는 대형도서관보다는 대학들간의 공동도서관의 설립을 제안한다. 프랑스의 경우 각 학교별이 아니라 전공별 도서관, 예컨대 법학도서관, 공학도서관 등을 설립하여 여러 대학교의 그 분야 학생들, 즉 여러 대학교의 법과 대학 학생들, 공과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여러 학교에서 각각 전부 구입할 도서들을 몇 권만 구입하여 공동으로 열람케 하고 그리하여 여유가 생긴 구입비용으로 다른 도서들을 구입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많은 책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결국 그 분야의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외국의 값비싼 정기간행물 등은 공동도서관에서의 개가식 열람으로 보게 한

다면 한 권만을 구입하여도 각 분야의 모든 전공학생들에게 열람혜택이 돌아가 매우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국제화시대에 자기의 대학만이 앞서겠다는 생각도 지극히 단견이다. 협조 속에서의 경쟁이 필요하다. 그동안 산업체와의 소위 산학협동은 몇몇 대학들이 성사시킨 바 있다. 그러나 산학협동 이전에 대학간(interuniversity) 협동체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위에서 언급한 제안들이 교육학적 이론에 밝지 못한 비전문가의 견해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느껴왔던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들임은 분명하다.

각 대학들이 자신의 대학만을 위한 발전이 아닌 진정으로 학문적 요람이 될 수 있는 대학문화가 조성되어 미래를 준비할, 그리고 세계의 지식과 철학을 선도해가야 할 한국의 대학이 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발전은 더이상 양으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고 질적인 향상을 지향하고 나아가야 한다. ■